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4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최재규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 증진 및 급식 위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단, 이 중 다목과 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2. “급식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사항
2. 급식시설 환경개선 적용범위
3.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급식시설 운영자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군수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급식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조리흡 등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시설 내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법」(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및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별도의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사항 및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관련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300여곳 중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현 기준으로는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